

2024년도 「글로벌혁신특구혁신사업육성(R&D)」 시행계획 재공고

글로벌 혁신특구 특구사업자의 해외공동 실증 R&D 지원을 위한 「글로벌혁신 특구혁신사업육성(R&D)」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특구사업자(예비 특구사업자 포함)는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9월 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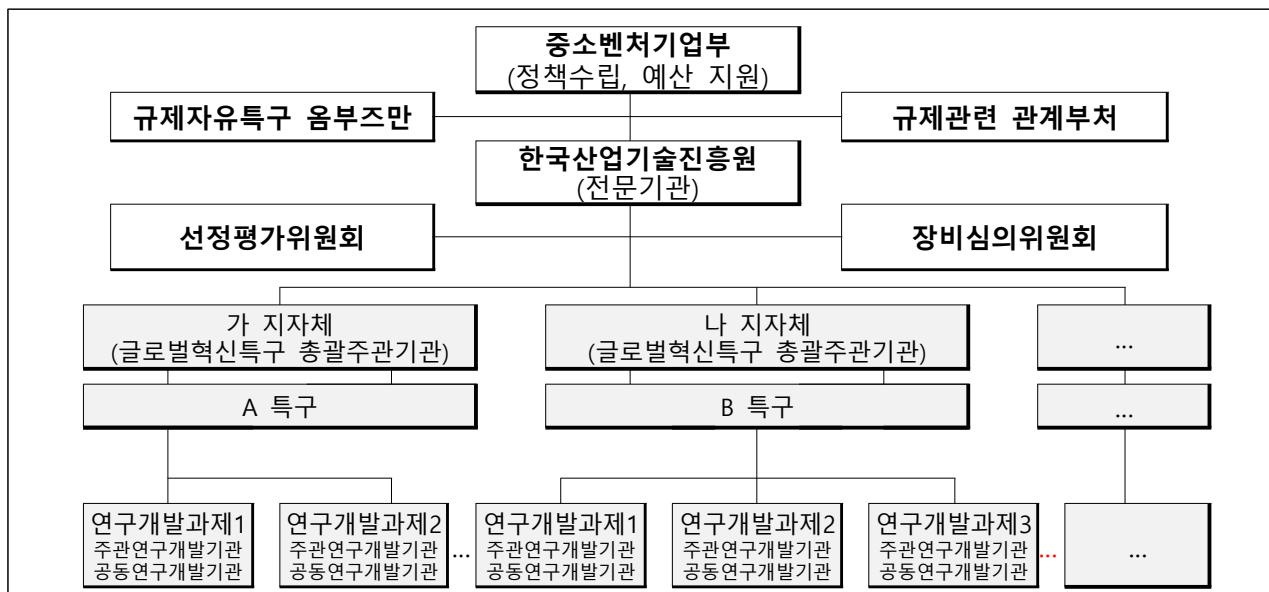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 국내 규제로 실증이 어려운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글로벌 혁신 특구를 지정하고, 지정된 특구사업자의 해외실증 R&D 등을 지원
 - 국내 첨단 분야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국내 실증이 어려운 경우 글로벌 해외 실증 R&D 지원
- * [참고] 해외 공동 실증 R&D 수행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공개 모집

나. 추진 체계



2

지원내용

가. 지원방식 및 대상

- 공모방식 : 자유공모
- 지원대상 : 규제자유특구위원회('24.4.30)^{*}에서 지정된 특구사업자 또는 '24년도 협약체결 전까지 특구사업자로 지정되는 자(예비 특구사업자)

순번	지역	글로벌혁신특구명	특구 지정일자
1	충청북도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2024. 4. 30
2	전라남도	직류산업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2024. 4. 30
3	부산광역시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2024. 4. 30

나. 지원규모 및 기간

- 특구별 지원대상 및 규모

* 기업별 사업비 구성은 국비 50% 이내, 지방비 25% 이상, 민간부담금 25% 이상으로 구성

순번	지역특구	특구별 지원과제 수	과제당 국비 지원규모(24개월)	특구별 투입예산
1	충청북도	2개 과제 내외	200백만원	400백만원 내외
2	전라남도	2개 과제 내외	200백만원	400백만원 내외
3	부산광역시	5개 과제 내외	200백만원	1,000백만원 내외
합계		9개 과제 내외	-	1,800백만원 내외

* 특구별 지원과제 수 및 과제당 지원 규모는 특구 내 수행기관 선정 및 선정평가위원회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기간 및 사업비 배분

구분	1차연도(6개월)	2차연도(12개월)	3차연도(6개월)
연차별 기간	2024. 7 ~ 2024. 12	2025. 1 ~ 2025. 12	2026. 1 ~ 2026. 6
사업비 배분	총사업비의 25%	총사업비의 50%	총사업비의 25%

* 연차별 기간 및 사업비 배분은 전문기관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2차연도 이후 사업비는 차년도 정부 R&D 예산 편성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신청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4개 지역별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계획」^{*}에서 지정된 특구사업자 또는 '24년도 협약체결 전까지 특구사업자로 지정되는 자(예비 특구사업자)
 - * 제1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24.4.30)
 -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0조(수행기관 등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 부여받은 실증특례를 활용하여 해외실증 R&D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

라. 지원조건

구분	내용																																									
지원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과제별로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전문기관과 협약 체결<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공동실증R&D 각 사업계획에 대한 3개년(24개월) 협약○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 예산 편성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될 수 있음○ 전체 연구개발비 구성<table border="1"><thead><tr><th>구분</th><th>형태</th><th>비율</th></tr></thead><tbody><tr><td>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td><td>현금</td><td>총연구개발비의 50% 이내</td></tr><tr><td>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지방비)</td><td>현금</td><td>총연구개발비의 25% 이상</td></tr><tr><td>기관부담연구개발비(민간부담금)</td><td>현금, 현물</td><td>총연구개발비의 25% 이상</td></tr></tbody></table>○ 수행기관 구분별 연구개발비 구성<table border="1"><thead><tr><th>구분</th><th>국비</th><th>지방비</th><th>민간부담금</th></tr></thead><tbody><tr><td>중소/중견기업</td><td>7/12 이하</td><td>3/12 이상</td><td>2/12 이상</td></tr><tr><td>공기업</td><td>7/16.7 이하</td><td>3/16.7 이상</td><td>6.7/16.7 이상</td></tr><tr><td>비영리법인</td><td>7/10 이하</td><td>3/10 이상</td><td>필요시 부담</td></tr></tbody></table>○ 수행기관 구분별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table border="1"><thead><tr><th>구분</th><th>현금 부담 비율</th></tr></thead><tbody><tr><td>중소기업</td><td>민간부담금의 40% 이상 현금 부담</td></tr><tr><td>중견기업</td><td>민간부담금의 50% 이상 현금 부담</td></tr><tr><td>공기업</td><td>민간부담금의 100% 현금 부담</td></tr><tr><td>비영리법인</td><td>필요시 부담</td></tr></tbody></table>○ 해외실증 R&D를 공동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해외 연구기관에 연구개발비를 집행하는 경우, 수행기관이 해외 연구기관과 계약 체결하여 지급 가능한 사업비의 비율은 수행기관별 전체 사업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아래 규정 준수<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5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장	구분	형태	비율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	현금	총연구개발비의 50% 이내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지방비)	현금	총연구개발비의 25% 이상	기관부담연구개발비(민간부담금)	현금, 현물	총연구개발비의 25% 이상	구분	국비	지방비	민간부담금	중소/중견기업	7/12 이하	3/12 이상	2/12 이상	공기업	7/16.7 이하	3/16.7 이상	6.7/16.7 이상	비영리법인	7/10 이하	3/10 이상	필요시 부담	구분	현금 부담 비율	중소기업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현금 부담	중견기업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현금 부담	공기업	민간부담금의 100% 현금 부담	비영리법인	필요시 부담			
구분	형태	비율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	현금	총연구개발비의 50% 이내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지방비)	현금	총연구개발비의 25% 이상																																								
기관부담연구개발비(민간부담금)	현금, 현물	총연구개발비의 25% 이상																																								
구분	국비	지방비	민간부담금																																							
중소/중견기업	7/12 이하	3/12 이상	2/12 이상																																							
공기업	7/16.7 이하	3/16.7 이상	6.7/16.7 이상																																							
비영리법인	7/10 이하	3/10 이상	필요시 부담																																							
구분	현금 부담 비율																																									
중소기업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현금 부담																																									
중견기업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현금 부담																																									
공기업	민간부담금의 100% 현금 부담																																									
비영리법인	필요시 부담																																									
연구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20% 이내로 산정 가능<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																																									

구분	내용
간접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로 산정 가능 ○ 영리기관의 간접비는 직접비(현금) 합계의 10% 이내로 산정 ○ 비영리법인의 간접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비율에 따름 <p>*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14조 및 별표6</p>

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전 아래 기준에 따라 사전 제외처리

구 분	지원제외 대상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과제가 공고된 사업의 기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준과제와의 중복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과제가 기 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확인 												
의무사항 불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사업시작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또는 과제수행성과로 인한 수익금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 중인 경우 												
참여제한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 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사업시작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해 국세 지방세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 · 회생절차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상기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사전지원제외 처리 												
과제수 및 인건비계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 수 및 인건비계상률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기업(주관) 수행가능 과제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이 당해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 수는 아래 표와 같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수행중 과제수</th> <th>신규 신청가능 여부</th> <th>신규 수행가능 과제수</th> </tr> </thead> <tbody> <tr> <td>2개</td> <td>불가</td> <td>불가</td> </tr> <tr> <td>1개</td> <td>가능</td> <td>1개</td> </tr> <tr> <td>0개</td> <td>가능</td> <td>2개</td> </tr> </tbody> </table>	수행중 과제수	신규 신청가능 여부	신규 수행가능 과제수	2개	불가	불가	1개	가능	1개	0개	가능	2개
수행중 과제수	신규 신청가능 여부	신규 수행가능 과제수											
2개	불가	불가											
1개	가능	1개											
0개	가능	2개											

구 분	지원제외 대상
* 기타 사전지원제외 기준은 「7.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름	

4

선정방법

가. 평가절차 및 추진일정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평가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특구별 주관기관은 해외공동실증R&D 사업에 대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제출
- (특구사업자 추천) 각 지자체는 특구별 특구사업자(기업)가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주관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기관별 수행내용을 추천
- (선정평가위원회) 전문기관은 제출된 각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해 계획서 구비요건, 참여제한 여부, 기타 신청자격요건 등에 대해 사전 검토 실시 후 별도의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 선정평가위원회는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주관기관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 및 질의응답 실시

다. 전문기관 선정평가위원회 평가기준

○ 아래 지표에 따라 사업계획서 검토

구분	사업계획의 우수성	수행기관 역량	해외실증 R&D 전략	기대효과	연구개발비	합계
배점	40	25	20	10	5	100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내용	배점	
사업계획의 우수성	사업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혁신특구 계획과의 연관성 ◦ 현행 규제의 인식 정도 ◦ 과제의 차별성 	10	40
	목표 및 추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목표의 적정성 ◦ 사업 추진 계획의 적정성 ◦ 글로벌 실증 계획의 적정성 	20	
	사업화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 사업화 전략의 구체성 	10	
수행기관 역량	사전준비 및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준비 과정의 적정성 ◦ 핵심기술 개발 역량 보유 여부 	15	25
	추진체계 및 연구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체계의 적정성 ◦ 수행기관의 연구 역량 	10	
해외실증 R&D 전략	추진 필요성 및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실증 R&D 추진의 필요성 ◦ 해외기관 협업 체계의 적절성 	10	20
	지식재산권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재산권 확보 계획 및 기술적, 경제적 기여도 	10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수출·고용 효과, 신규시장 창출 등 사업 추진 기대효과 	10	10
연구개발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절성 	5	5
합계				100

가.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공고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 9. 6.(금) ~ 2024. 9. 27.(금) 						
접수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 9. 13.(금) ~ 2024. 9. 27.(금) 18:00까지 						
서식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 사업·자료 → 사업공고 → 동 사업 공고 선택 						
접 수 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www.iris.go.kr)에 온라인 등록 ※별도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가 ■ 모든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에 사전 회원가입 등 필수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10px;"> <div style="text-align: center;"> <p>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5px;">연구자는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IRIS 기관 신청 진행</td> <td style="padding: 5px;">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td> </tr> <tr> <td style="padding: 5px;">① 연구자</td> <td style="padding: 5px;">② 연구개발 기관</td> </tr> </table>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접수 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5px;">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td> <td style="padding: 5px;"> 연구책임자 ④ 연구개발 기관 장</td> </tr> </table>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연구과제 신청완료</p> </div> </div> ■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기관 대표자 및 담당자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연구책임자의 과제 신청이 완료 가능 	연구자는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IRIS 기관 신청 진행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① 연구자	② 연구개발 기관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	연구책임자 ④ 연구개발 기관 장
연구자는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IRIS 기관 신청 진행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① 연구자	② 연구개발 기관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	연구책임자 ④ 연구개발 기관 장						
접수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③ : 연구책임자 필수(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 포함) ■ (연구개발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필수 이행사항 사전 조치 ☎ 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사이트내 매뉴얼 참조 요망)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계획서는 HWP 파일로 제출하되, 표지 하단에 인감 날인 스캔본을 HWP파일에 포함하여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 접수 마감일 18:00까지 IRIS에 최종 제출되지 않은 경우 추가 접수 불가 (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접수 불가함에 유의) ■ IRIS에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 및 실무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향후 일정 등의 안내가 진행되므로 IRIS 회원정보에 정확한 연락처를 입력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서류

No	제출서류	파일형태	비고
1	연구개발계획서	HWP	
2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PDF	기관별 작성
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PDF	참여연구자별 작성
4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PDF	참여연구자별 작성
5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현물 납입확인서	PDF	기관별 작성
6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기관별 작성
7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PDF	

- 글로벌혁신특구는 규제자유특구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글로벌혁신특구혁신사업육성(R&D)」 사업은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R&D)」의 내역사업임. 이에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및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의 절차를 따름
- 해외 공동 실증 R&D 추진 시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 평가 과정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 (예) 해외 기관과의 상호 협력 없이 독자적 R&D를 추진하는 경우, 시험분석·테스트 등의 단순한 용역 위탁만 의뢰하는 경우 등을 지양할 것
- 선정된 과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진행해야 하며, 필요시 특허전문가 활용비용 등을 연구비로 사용 가능함
- 선정된 과제는 협약서류 제출 시,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해외 협력 기관과의 계약서 안을 중소벤처기업부 법제도추진단에 제출하고 검토받아야 하며, 해당 검토 결과를 전문기관에 제출한 후 사업비 교부가 가능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연구개발 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동법 제31조부터 제34조 및 동 시행령 제56조부터 제63조에 따라 참여제한, 국비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특구법 제79조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구사업자 지정이 해제될 수 있음
- 본 사업은 3책5공 제도^{*} 적용 대상 사업이며, 위반 과제는 선정 이후에도 협약체결이 중단될 수 있으며 협약체결 이후에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약해약 및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음
 - *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수 최대 3개 이내
참여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수 최대 5개 이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 특구사업자가 제출한 각 사업계획에 대해 주관기관과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한 협약 체결 예정이며, 사업비는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를 통해 집행됨
- * 특구별 추천된 수행기관은 연구책임자 등의 IRIS 및 RCMS 회원 가입, 기관 등록 필요

-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료 납부 대상에 해당
 - *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42조
-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의 구입비용이 소요되는 연구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기관 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8조 및 제27조
- 부가가치세 포함 국비 1억원 이상의 구입비용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공개입찰을 통한 구매를 원칙으로 함
 -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3절 및 4절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7. 관련법령 및 규정」 을 준수

7

관련법령 및 규정

가. 근거법령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관련규정

-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
-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 기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
 - * 해당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담당기관		유선전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정책과	☎ 044-204-7210 ☎ 044-204-7193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규제혁신지원실	☎ 02-6009-3725
시스템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 www.iris.go.kr	☎ 1877-2041 ☎ 042-862-1500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RCMS www.rcms.go.kr	☎ 1661-5855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배경) 규제 특례에도 불구하고, 국내 실증이 어려운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1차 글로벌혁신특구를 지정('24.4월)
* (강원) AI 헬스케어,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전남) 직류산업, (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 (필요성) 실증에 제한이 적어 기술개발 활동이 원활한 해외 혁신 기관과의 기술협력을 통해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 기회 마련 필요

□ 추진내용

① 해외 공동 실증R&D

- 특구 내 중소기업이 글로벌혁신특구 규제특례를 활용하여 해외 진출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외 혁신기관·기업 등과 연계한 신기술·서비스 실증 R&D를 지원
- * (지원대상) 각 글로벌혁신특구별 특구사업자
(지원규모) 세부내용별 국비 2억원 내외 /24개월 이내 (국비 50% : 지방비 25% : 민자 25%)

② 가상실증인프라

- 신기술 제품·서비스의 시험·검증 기간과 비용을 단축하고, 무제한 시뮬레이션 테스트 등을 통한 제품 최적화 개발 수단으로 특구 사업자가 공동 활용 가능한 가상 실증 인프라를 조성
- * (지원대상) (강원) 강원테크노파크, (충북) 충북대학교병원, (전남) 녹색에너지연구원, (부산) 한국해양대학교산학협력단
(지원규모) 특구별 국비 2.5억원/24개월 이내 (국비 50% : 지방비 50%)

③ 해외실증 운영·지원

- 해외 공동 실증 R&D를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과제기획 및 연구자 매칭을 위한 공동 워크숍·세미나 등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
- * (지원대상) (강원) 강원테크노파크, (충북)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전남) 녹색에너지연구원, (부산) 한국해양대학교산학협력단
(지원규모) 특구별 국비 1.33억원/26개월 이내 (국비 50% : 지방비 50%)
특구 사전 준비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해 '24.5.1부터 사업수행 시작